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제정 선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04년 11월 「과학기술인 헌장」을 제정·선포하여 과학기술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2005년 생명과학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비윤리적 사건은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윤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해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공포하였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06년 1월 「과학기술 연구윤리」에 관한 열린 포럼을 개최하여 각계로부터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2006년 12월 「과학기술 연구윤리강령(안)」을 마련하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과학자의 윤리강령에 관한 연구」와 워크숍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과학자의 보편적 윤리강령(안)」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기술계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규범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및 UNESCO 한국위원회 등이 윤리강령 특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월간의 검토와 토의를 거쳐 공동으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및 UNESCO 한국위원회의 대표가 이 「과학기술인 윤리강령」에 서명하고, 모든 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규범으로 이를 선포한다. 과학기술 관련기관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윤리규범이나 지침은 이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 해당 기관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007년 4월 2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채영복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윤중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현구

UNESCO 한국위원회
위원장 김신일

- 과학기술인 윤리강령 -

과학기술은 인류가 공유하여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크다. 따라서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실성과 정직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치열해지는 경쟁 풍토, 과학기술연구의 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의 증가, 사회나 정치권의 불합리한 학문연구 개입 등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는 진실성과 정직성을 지켜야 할 과학기술인들로 하여금 그 품위를 유지하는 데 과중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과학기술인은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동규범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인이 지켜야 할 보편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직 종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한다.

2.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과학기술인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날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3. 보편성의 원칙

과학기술인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4.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품위유지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5. 법령의 준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연구대상의 존중

과학적 연구대상이 인간인 경우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생명윤리에 부합해야 하며, 동물인 경우 생명의 존엄성에 유의한다.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7. 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과학기술인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당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8.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9.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10.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과학기술인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한다.

11.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인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12. 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 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